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3085호
- 다. 제출일자: 2025. 8. 11.
- 라. 회부일자: 2025. 8. 14.

2. 제 안 사 유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순환경제 사회 구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 증가로 인해 재활용 및 새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및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서 2017년 9월 개관 이래 민간 전문기관에 의해 위탁운영 중에 있음.

- 위탁기관과의 협약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며,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신규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3년('26.1.1. ~ '28.12.31.)

- 위탁방식: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신규 위탁)
-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5.7.18.)
- 소요예산(안): 6,262백만원('26년 예산안 기준)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5조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필요성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은 자원순환, 환경, 디자인, 관련 산업 활성화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효율적으로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순환경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2023년~2025년 동안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자원순환과)과 입주기업 지원(창업정책과) 사무를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나, 2026년부터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신규위탁을 추진하는 바임.

다. 주요 위탁 사무

- 새활용플라자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새활용 및 자원순환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민간제로마켓 모집 및 운영 지원
- 새활용 산업 육성 및 소재 유통 활성화
-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및 인프라 관리

라. 시설 개요

- 시설명: 서울새활용플라자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규 모: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16,678.75㎡
- 준공일자: 2017.9.

○ 공간구성

층	운영 공간
5층	운영사무실, 교육실, 레스토랑, 공용회의실(3개소)
4층	입주기업 사용 공간
3층	입주기업 사용 공간, 창업지원센터, 카페
2층	신한은행아름인도서관, 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친환경체험학습센터
1층	새활용하우스, 꿈꾸는공장, 미디어룸, 야외창작실
지하1층	소재은행, 재사용작업장(입주기업:밀알복지재단)
지하2층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창고

○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5조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4조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라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 략)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위탁 기간 만료('25.12.31.)와 함께 기존 사무에 입주기업 지원 사무 등을 추가하여 민간위탁(신규)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규정 검토

- 본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²⁾와 제14조³⁾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사무는 기존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의 종료일('25년 말)에 맞춰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무를 추가하고 신규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7월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계획⁴⁾이 수립되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적정⁵⁾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3) 제14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계획(자원순환과-10488, '25.7.14.).

5)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순환과)(조직담당관-7385 '25.7.18.).

으로 심의하였으며, 관련 절차⁶⁾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사무명	유형	現수탁법인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신규(통합)	서울디자인재단	3년 이내	적정

2)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 동 민간위탁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제로마켓 모집 및 운영 지원, 새활용 산업 육성 및 소재 유통 활성화 등 기존 사무에 입주기업 지원 및 인프라 관리 사무를 추가하는 것임.
- 입주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무는 2017년 개관 이래 자원순환과에서 소관하였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무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창업정책과로 이관⁷⁾한 바 있음.

기후환경본부는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무 이관 취지에 대해 입주기업 수의 지속적 감소와 매출 증대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관 이후에도 입주기업의 수는 이관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⁸⁾되며, 사무 이관 취지와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무를 재이관,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입주기업 지원 사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새활용 분야는 도입 초기에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등장했지만, 현재는

6)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7)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2.)에 새활용 전문역량 강화 필요가 지적됨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서울창업허브 성수'를 통합하고 창업정책과가 기업지원 업무를 이관받음.

8) 연도별 입주 기업수: (이관 전) 2017년 37개, 2018년 42개, 2019년 40개, 2020년 37개, 2021년 35개, 2022년 24개/ (이관 후) 2023년 26개, 2024년 32개(100%), 2025년(7월 기준) 32개(100%).

관심도에 비해 산업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인 만큼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분야 기업의 발굴·육성과 창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의 역량 강화와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운영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민간위탁비 검토

- 2026년 민간위탁비 총액은 62억 2천3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14억 1천 3백만원(22.7%), 운영비는 27억 2천3백만원(43.8%), 사업비는 19억 3천만원(31.0%), 위탁수수료는 1억 5천7백만원(2.5%)이며, 입주기업 지원 비용은 7억 5백만원으로 위탁비의 11.3%를 차지하고 있음.

2025년 대비 인원⁹⁾ 증원과 신규 사업 운영 등으로 인건비는 2억 7천7백만원(24.4%), 사업비는 4억 3천6백만원(29.2%), 위탁수수료는 6천3백만원(66.9%) 증가한 반면 운영비는 1억 1천2백만원(△3.9%) 감소함에 따라 민간위탁비는 6억 6천5백만원(12%) 증가하고 있음.

입주기업 지원 사무 재이관에 따른 인원 증가는 논외라 하더라도 매년 인원이 증가(인건비 증가 수반)하고 있는 점과 신규사업¹⁰⁾ 추진 등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29%인 4억 3천6백만원 증가하는 점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2025년, 2026년 민간위탁비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위탁수수료	합 계
2025년	계		1,136 (20.4%)	2,835 (51.0%)	1,494 (26.9%)	94 (1.7%)	5,558
	창업정책과	입주기업 지원	155	271	144 ¹¹⁾	0	0
	자원순환과	시설관리·운영	981	2,564	1,350	94	4,989 ¹²⁾
2026년 (예정)	계		1,413 (22.7%)	2,723 (43.8%)	1,930 (31.0%)	157 (2.5%)	6,223
	자원순환과	입주기업 지원	245	270	190	0	705
		시설관리·운영	1,168	2,453	1,740	157	5,518

9) 연도별 운영 인원: 2022년 16명(시설관리·운영 14명, 입주기업 지원 2명), 2023년 13명, 2024년 14명, 2025년 15명, 2026년 19명(시설관리·운영 14명, 입주기업 지원 5명).

10) 2026년 신규사업: 장난감 수리소 운영(4억 5백만원), 텀블러 새활용 사업 운영(5천만원), 제로웨이스트 산업 육성(입주기업 지원)(1억 9천만원).

11) 2025년 국고보조금(환경부) 신청했으나 미편성됨.

12) 민간위탁금 4,614백만원(제331회 정례회 100백만원 추경) + 민간위탁 사업비 375백만원.

참 고	2026년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예산내역(안)
-----	-----------------------------

(단위 : 천원)

항목	내역	금액	구성비
인건비	기본급	858,639	13.8%
	제수당	330,406	5.3%
	퇴직충당금	99,087	1.6%
	사회보험료	125,288	2.0%
소 계		1,413,420	22.7%
운영경비	공공요금, 제세, 지급수수료, 우편통신비	388,521	6.3%
	소모품비, 회의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145,886	2.3%
	종합시설위탁관리비	1,530,114	24.6%
	여비, 업무추진비 등	63,989	1.0%
	자산취득비, 수선유지교체비	594,240	9.6%
소 계		2,722,750	43.8%
사업비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785,000	12.6%
	ESG 시민행사, 제로플 솔버튼	350,000	5.6%
	새활용 탐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150,000	2.4%
	장난감 수리소 운영	405,000	6.5%
	텀블러 새활용 사업 운영	50,000	0.8%
	제로웨이스트 산업 육성(입주기업 지원)	190,000	3.1%
소 계		1,930,000	31.0%
기타	위탁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156,918	2.5%
합 계		6,223,088	100.0%

[붙임 1] 2022년, 2025년, 2026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별 예산편성내역

○ 2022년 예산편성내역(자원순환과)

(단위: 천원)

구분	계	입주기업 지원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계	4,661,880	432,168	4,229,712
인건비	1,042,000	114,508	927,492
운영비	2,395,000	7,660	2,387,340
사업비	1,204,000	310,000 (국비 80,000)	894,000
수수료	20,880	-	20,880

※ 수수료: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제외)의 2%

※ 2022년은 자원순환과 통합 운영,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2023.1.1.자로 창업정책과로 이관

○ 2025년 예산편성내역(창업지원과+자원순환과)

(단위: 천원)

구분	계	입주기업 지원 (창업정책과)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자원순환과)
계	5,558,157	569,104	4,989,053
인건비	1,135,970	154,500	981,470
운영비	2,834,673	271,090	2,563,583
사업비	1,493,514	143,514	1,350,000
수수료	94,000	-	94,000

※ 수수료: 사업비의 2%

※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2023~2025년 창업정책과에서 담당, 창업지원센터 운영

○ 2026년 예산편성내역(자원순환과)

(단위: 천원)

구분	계	입주기업 지원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계	6,223,088	705,054	5,518,034
인건비	1,413,420	245,054	1,168,366
운영비	2,722,750	270,000	2,452,750
사업비	1,930,000	190,000	1,740,000
수수료	156,918	-	156,918

※ 수수료: 일반관리비(위탁금의 2%)+ 이윤(일반관리비의 6%)+ 부가가치세((일반관리비+이윤)의 10%)

※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2026. 1. 1.자로 자원순환과로 재이관

※ 2026년 국비 별도 신청(창업정책과, 160백만원, 국/시비 50:50)

[붙임 2] 2023년~2025년 입주기업 지원예산 내역(창업정책과)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2023년	계	180,000	113,519	549,079	842,598
	창업지원센터 운영	180,000	113,519	389,079	682,598
	입주기업 지원	0	0	160,000 (국비 80,000)	160,000
2024년	계	210,913	281,964	448,850	941,727
	창업지원센터 운영	210,913	281,964	288,850	781,727
	입주기업 지원			160,000 (국비 80,000)	160,000
2025년	계	154,500	271,090	143,514	569,104
	창업지원센터 운영	154,500	271,090	143,514	569,104
	입주기업 지원	0	0	0	0

※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운영(2023~2025)

[붙임 3] 2026년~2028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예산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6,223,088	6,646,245	6,575,091
인건비	1,413,420	1,455,823	1,499,497
운영비	2,722,750	3,008,510	2,790,134
사업비	1,930,000	2,026,500	2,127,825
수수료	156,918	155,412	157,635

※ 2027년 이후 예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소요예산 재산정 후 편성 예정